

<p>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管理局長 柳根夏 管理局長입니다.</p> <p>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告)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,</p> <p>서울특별시립으로 '95학년도 2학기중에 국민학교 6개 학교를 신설하고, 행정구역 개편과 현행 학교위치와 일치하도록 법정동으로의 일원화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</p> <p>둘째,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국민학교는 동부교육청 관내 중랑구 목동의 원목국민학교, 중랑구 신내동의 봉화국민학교와 신현국민학교, 북부교육청 관내 노원구 공릉동의 용원국민학교, 강서교육청 관내 양천구 신정동의 은정국민학교와 양천구 목동의 목원국민학교입니다.</p> <p>다음으로 '94년 12월 22일 제정공포된 “자치구설치및특별시·광역시·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”에 의거 조례내용 중 국민학교 50개교, 중학교 26개교, 고등학교 4개교, 유치원 3개원 등 총 83개교를 행정구역에 맞게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이와 함께 그간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부 혼용되어 온 경우라든가 개교후 오랜시일이 경과된 학교이거나 또는 택지개발지역 등에서 지번이 변경되었거나, 확정되었음에도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.</p> <p>법정동으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지번이 변경되는 학교는 국민학교 37개교, 중학교 21개교, 고등학교 18개교, 유치원 10개원 등 총 86개교이고,</p> <p>학교설립후 오랜 시일이 경과되어 지번이</p>	<p>변경되었거나 확정됨으로써 지번이 변경되는 학교는 국민학교 73개교, 중학교 37개교, 고등학교 11개교, 방송통신고등학교 2개교, 유치원 2개원 등 총 125개교이며, 자세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</p> <p>셋째로, 조례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·운영한다”라고 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2조입니다.</p> <p>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</p> <p>감사합니다.</p> <p>.....</p> <p>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</p> <p>○專門委員 金長虎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告)</p> <p>1. 개정경위</p> <p>본 조례(안)은 199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, 1995년 5월 1일 소관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</p> <p>2. 개정사유</p> <p>○ 서울특별시립으로 국민학교 6개교를 1995학년도 제2학기 개교예정으로 신설하고,</p> <p>○ 행정구역 개편 및 현행학교 위치 법정동으로의 일원화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변경코자 함.</p> <p>3. 주요골자</p> <p>○ 국민학교 6개교를 신설함[별표 1]</p> <p>—신설학교명: 원목, 봉화, 신현, 용원, 은정, 목원</p> <p>○ “서울특별시광진구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·광역시·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(’94.12.22)”공포 및 학교 위치 법정동으로의 일원화 등에 따라 각급학교의 위치를 변경함.</p>
--	--

구 분	국민학교	중 학교	고등학교	방송통신 고등학교	유 치 원	계	비 고
행정구역개편	50	26	4	—	3	83	
법정동화	37	21	18	—	10	86	
지번변경(확정)	73	37	11	2	2	125	
계	160	84	33	2	15	294	

4. 근거법령

- 교육법 제82조
-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·광역시·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(안) 별표1에서 국민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바,
 - '95학년도 제2학기 신설학교 설립계획을 보면, 국민학교 6개로서 동부교육청관내에 원목, 봉화 및 신현국민학교가 '95년 12월에, 북부교육청 관내에 용원국민학교가 '95년 9월에, 강서교육청 관내에 복원 및 은정국민학교가 '95년 9월과 12월에 각각 개교예정이고,
 - 학교설립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인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내 아파트 입주학생수용 및 기존 학교의 과대·과밀·2부제수업 해소를 위한 국민학교 수요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,
 - 학교별 공사추진과 개교예정 시기가 '95학년도 2학기에 해당되고,
 - 신설학교의 교명제정을 학교설립 해당 지역의 역사와 유래에 대한 자료와 지역주민, 교육위원, 구·시의원 및 국회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, 교명제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학교설립의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.
-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·광역시·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('94. 12.22제정공포)에 의거
 - 조례(안) 별표1에서 서울광장국민학교의 49개 국민학교의 주소를
 - 조례(안) 별표2에서 광양중학교의 25개 중학교의 주소를

- 조례(안) 별표3에서 광남고등학교의 3개 고등학교의 주소를
- 조례(안) 별표7에서 서울자양국민학교의 병설유치원의 2개 유치원의 주소를 각각 변경하였으며,
- 본 조례(안) 별표1의 37개 국민학교의 주소를 별표2의 21개 중학교의 주소를 별표3의 18개 고등학교의 주소, 별표7의 10개 유치원의 주소를 그동안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던 것을 법정동으로 일원화하여 일체 정비한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본 조례(안) 별표1의 73개 국민학교, 별표2의 37개 중학교, 별표3의 33개 고등학교, 별표4의 2개 방송통신고등학교, 별표7의 2개 유치원의 주소를, 그동안 도시계획사업 등의 사유로 지번이 변경 확정되어 일체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됨.
- 따라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은 국민학교 신설 경우 '95년도 각급학교 설치계획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과 학교시설 공사의 추진진도에 맞추어 '95학년도 2학기에 개교예정이고,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·광역시·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해 각급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 문제점이 없어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

.....
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.
 (李喆鎬 委員長, 蘇中天 幹事와 司會交代)
 ○委員長代理 蘇中天 專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.
 그러면 本 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各